

- 한편, 그동안 별도의 조례 규정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처리되어 왔던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의2 제1호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는 사례'중 '지방이 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예를 들어 지방 이주가 아닌 서울시내 이주라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은평구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 거리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임.)
 - 따라서 시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이용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예를 들어 도보로 1시간 이상 소요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시 거주지이전 등으로 선납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한 민원발생이 빈발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함.
- 나. 주요골자
-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사유중 "지방이주"를 "거주지이전"으로 수정함.(안 제6조의2 제1호)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의무직렬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제151회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37
------	-----

2004년 9월 . 6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박현화)

가.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3.1.17 대통령령 제17880호)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에 근무하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직급별로 518,000원에서 710,000원까지 지급하였던 것을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하여 818,000원에서 1,010,000원까지 지급하고(안 제2조 별표1)
- 현재 별도의 규정 없이 서울시 전임계약직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별표2)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3.1.17 대통령령 제17880호)으로 국립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의 의료업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학교보건원에 근무하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직급별로 518,000원에서 710,000원까지 지급하였던 것을 일률적으로 300,000원씩 인상하여 818,000원에서 1,010,000원까지 지급하고,
- 현재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별도의 규정 없이 서울시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지급시기는 2004.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의무직렬공무원은 7명(3급 1명, 4급 4명, 5급 2명)이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은 2명으로 동조례안 개정에 따른 수당인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9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별도의 추경 편성 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에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 현황

계	의무직렬공무원			전임계약직공무원		
	소계	전문의	일반의	소계	가급	나급
9	7	6	1	2	1	1

- 동개정조례안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은 국가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중 의료업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을 따르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 국가의무직렬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개정으로, 서울시 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2003.9.25 서울특별시조례 제4133호)으로 2003.7.1부터 300,000원씩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어,
 - 타 기관과의 형평을 맞추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위한 동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교육감소속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별표9 제2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2004. 5. 24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 인상에 관한 승인을 받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2 제1호중 “지방이주”를 “거주지이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